제2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1장 개인적 법익 침해

제2장 사회적 법익 침해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1장 개인적 법익 침해

1. 사생활 침해 등
2.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3.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반
4. 아동·청소년 보호 위반

1. 사생활 침해 등

사례 1

의결번호	제2021-54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월 3일 연예면
기사제목	방청객 사진 놓고 낄낄… '놀토' 일반인 희화화 논란

1. 보도내용

「방청객 사진 놓고 낄낄… '놀토' 일반인 희화화 논란」 제하의 사진

tvN '놀라운 토요일 캡처'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다른 프로그램의 방청객으로 나온 일반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재사용하여 외모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방청객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일반인인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21-1007호
매 체 명	오펀 디스커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9월 17일 네티즌화제면
기사제목	BJ철구, 외질혜와 이혼 마무리 "법적 솔로, 위자료는 20억"

1. 보도내용

「BJ철구, 외질혜와 이혼 마무리 "법적 솔로, 위자료는 20억"」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 당사자의 초상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유명 남성 BJ(방송자키)의 이혼 소식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딸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진이 이미 공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모가 관련된 폭행 및 성매매 사실을 언급하며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부정적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딸의 초상을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장과정은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3

의결번호	제2021-61호
매 체 명	뷰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월 14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김상교, 효연 저격…옥타곤 포주 석씨가 관리한 연예인 물음표

1. 보도내용

「김상교, 효연 저격…옥타곤 포주 석씨가 관리한 연예인 물음표」 제하의 사진

소녀시대 멤버 효연(사진=김상교 인스타그램 캡처)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성명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명 '버닝썬 사건' 당시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던 역삼지구대 경찰관 2명의 성명을 게재하였다.

이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이들이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2020년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당사자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특정 범죄행위와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시정권고 심의기준」제1조제1항 및「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4

의결번호	제2021-634호
매 체 명	위키트리(Wikitree)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5월 31일 사회면
기사제목	보배드림 발칵 뒤집은 여자 목사… 고깃집에서 이렇게 진상 부렸다 (사진·통화 녹취)

1. 보도내용

「보배드림 발칵 뒤집은 여자 목사… 고깃집에서 이렇게 진상 부렸다 (사진··통화 녹취)」 제하의 링크 내 음성파일

여자 목사가 고깃집에서 음식을 다 먹은 후 환불해달라며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당 측은 환불을 거부하자 이 여자 목사가 휴대폰으로 문자 욕설을 보내는가 하면 전화로 욕설을 가했다고 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식당을 방문하겠다고 연쇄 예약을 하고 '별점 테러'까지 가했다고 했다. 식당 측은 **'음식 다 먹고 나간 다음 환불해달라고 협박하는 목사... 황당합니다'**란 글을 27일 보배드림에 올려 이처럼 주장했다.

※ 기사 내 링크 클릭 시 나타나는 음성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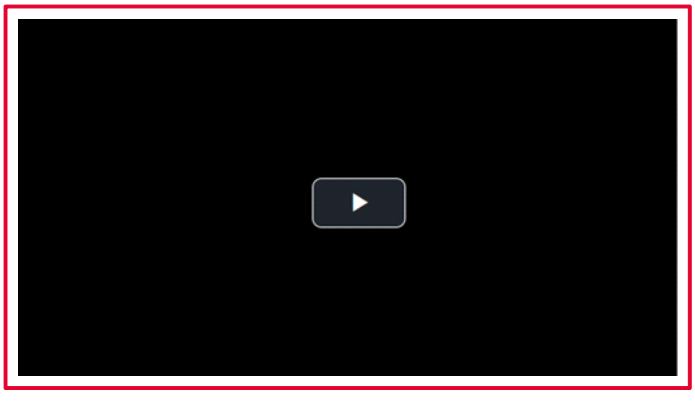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음성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음성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목사가 음식을 다 먹은 후 환불해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고깃집 주인과 해당 손님 간 통화 녹음파일이 담긴 모 인터넷 게시판 링크를 게재하여 손님의 음성을 공개하였다.

이는 사인 간의 통화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음성권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5

의결번호	제2021-883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8월 2일 연예면
기사제목	“갑자기 돌변한 박수홍…불안정하고 비상식적 이었다” 전 여친 ‘제보’

1. 보도내용

「“갑자기 돌변한 박수홍…불안정하고 비상식적 이었다” 전 여친 ‘제보’」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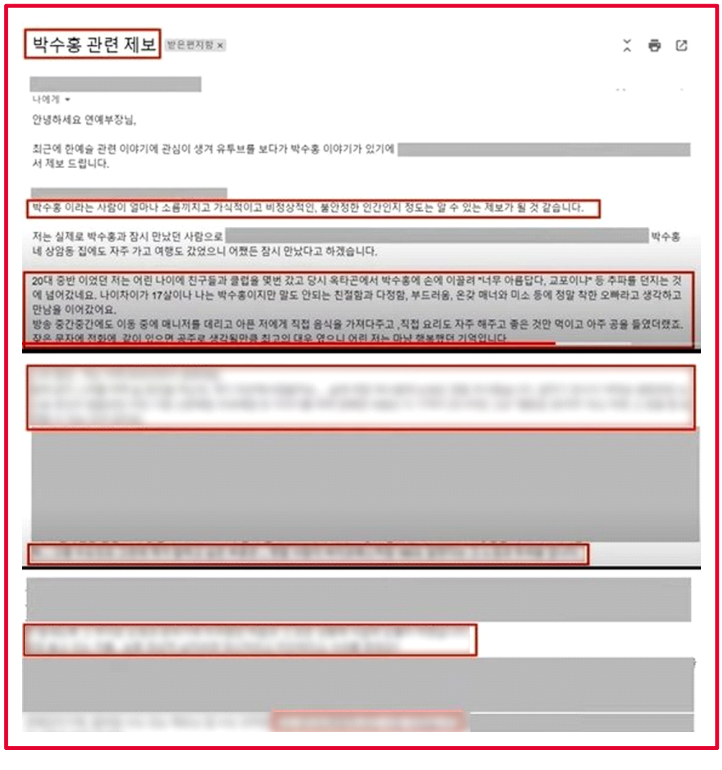
박수홍 관련 제보

안녕하세요 연예부장님,

최근에 한예슬 관련 이야기에 관심이 생겨 유투브를 보다가 박수홍 이야기가 있기에 서 제보 드립니다.

박수홍 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름끼치고 가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불안정한 인간인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제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박수홍과 잠시 만났던 사람으로 박수홍 네 상암동 집에도 자주 가고 여행도 갔었으니 어쨌든 잠시 만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중반 이였던 저는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클럽을 몇번 갔고 당시 옥타곤에서 박수홍에 손에 이끌려 "너무 아름답다, 고프이너" 등 추파를 던지는 것에 넘어갔네요. 나이차이가 17살이나 나는 박수홍이지만 말도 안되는 친절함과 다정함, 부드러움, 온갖 매너와 미소 등에 정말 착한 오빠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갔어요.

방송 중간중간에도 이동 중에 매니저를 데리고 아픈 저에게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고 ,직접 요리도 자주 해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아주 공을 들였더랬죠.

장문 문자에 전화에 같이 있으면 공주로 생각될만큼 최고의 대우 였으니 어린 저는 마냥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 원 보도에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튜브를 인용하여 그와 스파 펜션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제보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6

의결번호	제2021-1015호
매 체 명	세계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8월 31일 11면
기사제목	할머니가 빤 교복 빨랫줄에 덩그러니

1. 보도내용

「할머니가 빤 교복 빨랫줄에 덩그러니」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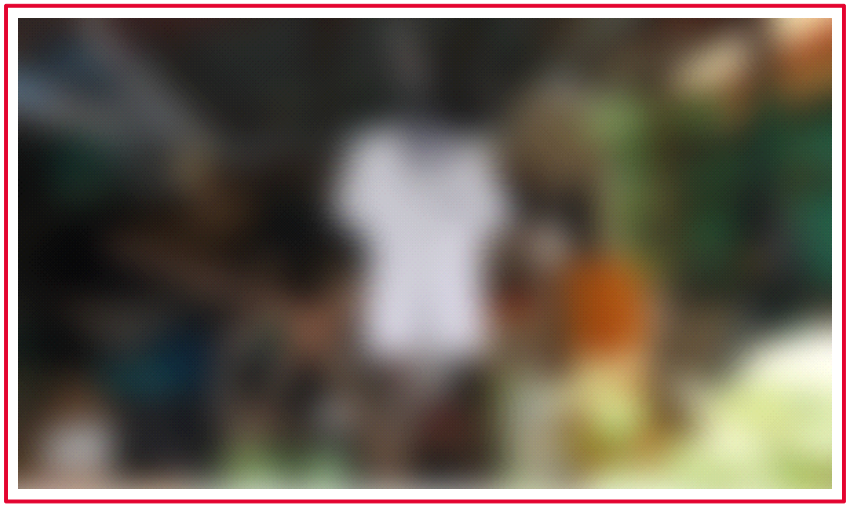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유사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현장인 해당 주택의 전경 사진을 게재하였다.

설령 위 기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특정 범죄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대상인 개인의 거주지 내부를 공개하는 것, 특히 해당 주택의 옥상 내부를 근접 촬영하는 등 거주 공간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공공의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7

의결번호	제2021-709호
매 체 명	인터넷 경북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6월 24일 사회면
기사제목	주민 신고 접수…구미 실종 60대 공개수사 3시간 만에 찾아

1. 보도내용

「주민 신고 접수…구미 실종 60대 공개수사 3시간 만에 찾아」 제하의 사진

가 집을 나서는 모습. 구미경찰서 제공

「이틀 전 집을 나가 공개수사로 전환됐던 ○○○(○○) 씨가 발견됐다. (중략)

앞서 구미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 55분 '○○○cm, 몸무게 ○○kg의 ○○세 ○○○ 씨를 찾습니다'라는 실종 경보 문자를 전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미 ○○동에 거주하는 ○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집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구미 지역 경찰서의 공개수사와 주민의 신고를 통해 실종자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실종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종자의 초상을 공개하고 성명, 나이, 체형, 거주지 등을 노출하였다.

위 기사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사의 보도시점이 실종자를 발견한 이후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미 발견된 실종자의 실종당시 모습이 담긴 초상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한 것은 일반인인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8

의결번호	제2021-1186호
매 체 명	e머니에스(e money S)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0월 30일 사회면
기사제목	경인 아라뱃길서 실종된 31세 여성…지인 “유언비어 자제 부탁”

1. 보도내용

「경인 아라뱃길서 실종된 31세 여성…지인 "유언비어 자제 부탁"」 제하의 사진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지인이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중략)

전단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1시 20분 인천 아라마루 전망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다. A씨는 키 ○○○cm, ○○형에 ○○ 체구이며 ○○색 머리를 하고 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인천 경인 아라뱃길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종 당시 배포되었던 전단지를 그대로 게시하여 실종자의 초상과 나이, 인상착의를 공표하였다.

해당 기사의 게재시점이 실종자의 사망사실 확인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초상과 나이, 인상착의와 같은 사적 정보를 계속해서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 및 유족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9

의결번호	제2021-645호
매 체 명	위키트리(Wikitree)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5월 11일 사회면
기사제목	“감옥에서 러브레터?” 정인이 양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 공개

1. 보도내용

「“감옥에서 러브레터?” 정인이 양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 공개」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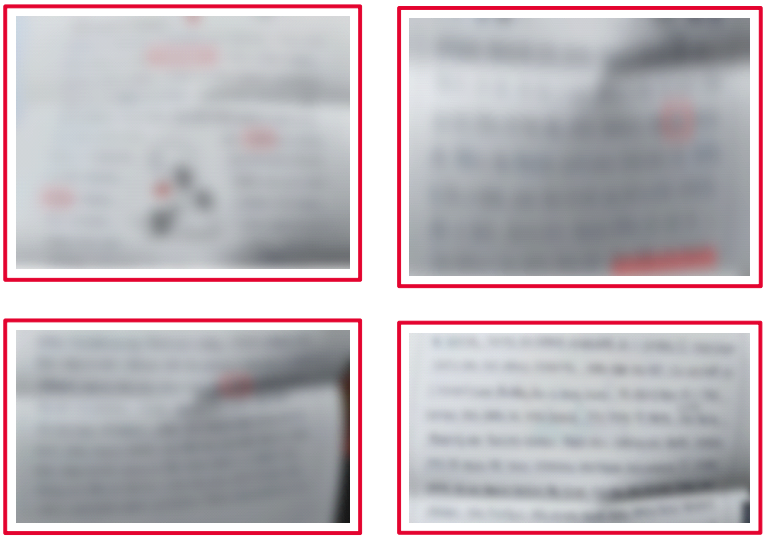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 내용과 일반인의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이 가족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편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비록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간 서신 내용을 게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해당 편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의 이름을 공표하였다. 일반인에 불과한 이들이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인이란 이유로 실명 공개를 수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들의 이름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것은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 및 제1조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0

의결번호	제2021-911호
매 체 명	텐아시아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8월 24일 뮤직면
기사제목	NCT 루카스, 사생활 논란 속 '팬과 연애'

1. 보도내용

「NCT 루카스, 사생활 논란 속 '팬과 연애'」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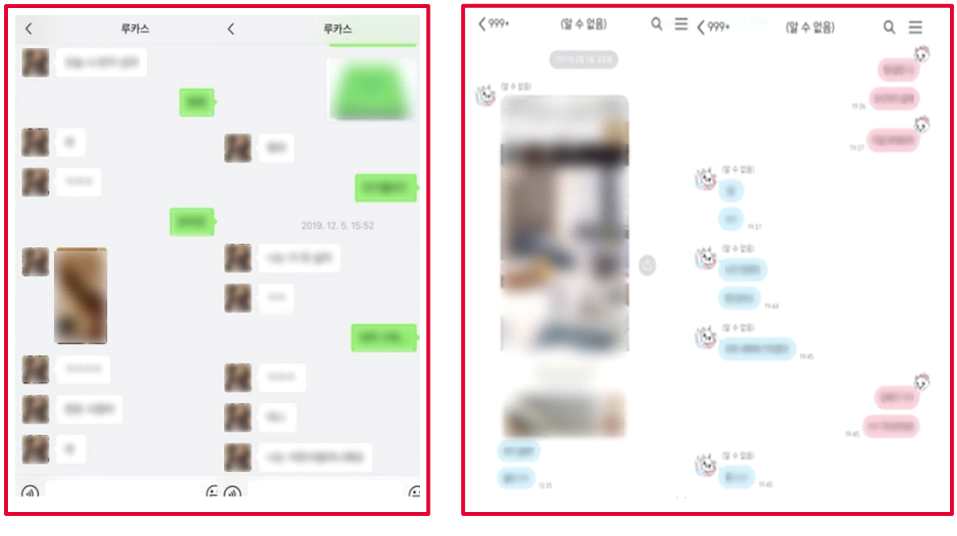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과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SNS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예인과 글 게시자간의 통신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상세히 공개돼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사례 11

의결번호	제2021-440호
매 체 명	일요신문i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3월 16일 특종/단독면
기사제목	구미 3세 여아 친모 ○ 씨 얼굴, '그것이 알고 싶다' SNS 통해 공개돼

1. 보도내용

「구미 3세 여아 친모 ○ 씨 얼굴, '그것이 알고 싶다' SNS 통해 공개돼」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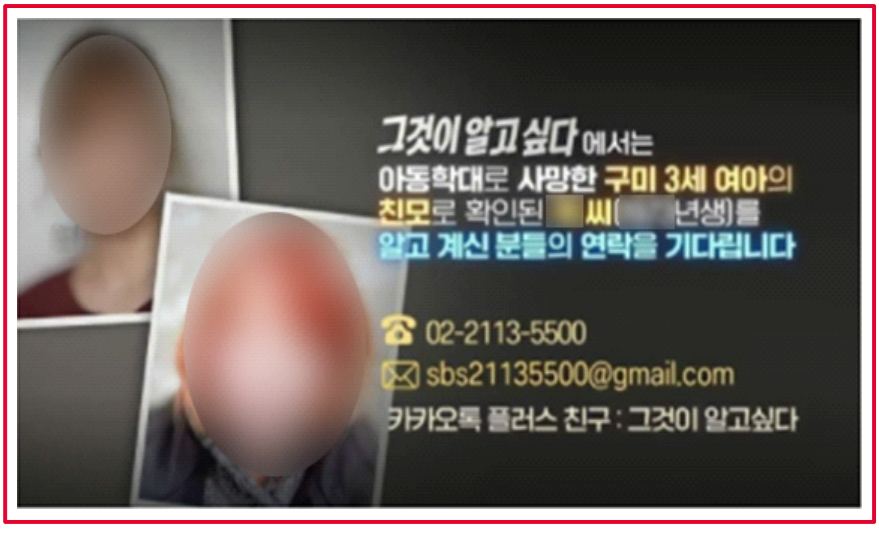

※ 원 보도에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피고인의 초상과 성씨,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및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일부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인 피고인의 초상을 공개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2

의결번호	제2021-1034호
매 체 명	살구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9월 14일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소름돋는 진실..남자친구 ○씨 인스타 비공개 이유?

1. 보도내용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소름돋는 진실..남자친구 ○씨 인스타 비공개 이유?」 제하의 링크 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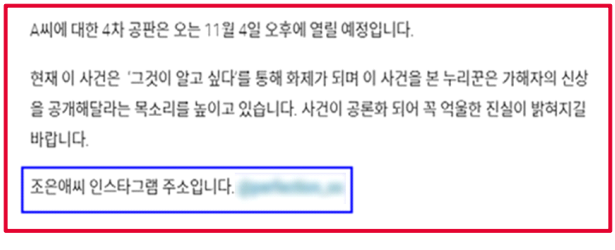
A씨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화제가 되며 이 사건을 본 누리꾼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 되어 꼭 억울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조은애씨 인스타그램 주소입니다.

※ 기사 내 링크 클릭 시 나타나는 사진(피고인 A씨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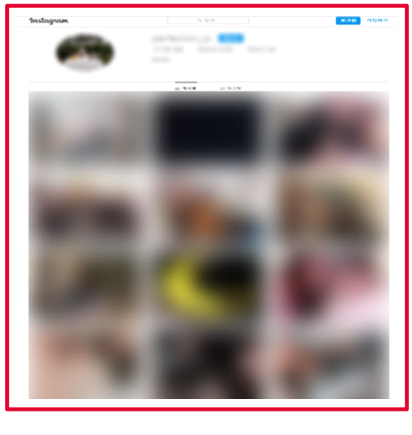

※ 원 보도 및 링크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을 알 수 있게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숨진 여성의 SNS 주소를 링크(link)방식으로 게시, 이를 통해 피고인 남성의 초상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링크(link) 방식을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인에 불과한 피고인의 초상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를 직접 기사에 인용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판례로써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3.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반

사례 13

의결번호	제2021-1152호
매 체 명	연합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0월 14일 최신기사면
기사제목	“절실함이 없네”…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1. 보도내용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2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은 배경에는 그가 심 선수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조씨는 2014년 8월 29일 밤 심 선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스킨십 여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화를 내고, 집으로 부른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

이어 조씨는 심 선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redacted]”면서 강제추행을 했다. (중략)

포렌식 결과를 보면 조씨는 2015년 12월 12일 밤 심 선수에게 “[redacted]”, 2016년 1월 2일 “[redacted]”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중략)

조씨는 평창 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 7일 텔레그램으로 “[redacted]”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심 선수는 “[redacted]”고 거절했다. 이에 조씨는 “[redacted]”라고 협박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코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코치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세한 범행수법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선수 본인의 '미투운동'으로 인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피해자가 별도로 판결문 열람제한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공개가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는 노골적인 성관련 표현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공표하지 않고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정보전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4. 아동·청소년 보호 위반

사례 14

의결번호	제2021-182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월 22일 A11면
기사제목	“07년생 의정부 일진 근황”…지하철에서 노인 폭행하는 10대 중학생들 (영상)

1. 보도내용

「“07년생 의정부 일진 근황”…지하철에서 노인 폭행하는 10대 중학생들 (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소년보호사건의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 사건 당사자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게재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 가해자 및 일반인 피해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였다. 이는 소년 보호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것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 기준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일반인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해당 사건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시정권고 심의기준」제6조제1항, 제1조제1항, 제16조 및「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장
사회적 법익 침해

1. 차별 금지 위반
2.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3. 성관련 보도
4. 자살 보도
5. 마약·약물 보도
6. 폭력 묘사
7. 충격·혐오감
8. 여론조사 보도
9. 기사형 광고
10. 기사 제목

1. 차별 금지 위반

사례 15

의결번호	제2021-461호
매 체 명	아시아투데이ASIATODAY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3월 19일 국제면
기사제목	중국판 된장녀 궈메이메이 다시 감옥행 유력

1. 보도내용

「중국판 된장녀 궈메이메이 다시 감옥행 유력」의 제목

「중국에도 허영 그득한 부정적 의미의 된장녀들이 많다. 어쩌면 한국 성인 여성 인구만큼이나 많을지 모른다.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이른바 쉬안푸(炫富·부를 과도하게 과시함), 즉 시쳇말로 돈질이 유행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 보인다. (중략)

〈또 다시 감옥행 위기에 내몰린 중국의 대표적 된장녀 궈메이메이〉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중국의 배우 출신 모 여성이 자신의 통장 액수를 과시하였으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면서 그를 '중국판 된장녀'라고 지칭하였다.

'된장녀'는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명품 등 사치를 일삼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6

의결번호	제2021-685호
매 체 명	위키트리(Wikitree)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5월 10일 사회면
기사제목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보도내용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 제목

「중국인이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저지른 사건이 공분을 샀다. 해당 중국인은 택시기사의 추격으로 붙잡혔다. 50대 중국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A(52)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보도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50대 중국인이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을 전하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비록 음주운전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긴 하나 이는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적에 관한 내용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보도한 것으로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 및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사례 17

의결번호	제2021-781호
매 체 명	e머니에스(e money S)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6월 9일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그들은 악마였다”… 이모부부, 10살 조카 학대 영상 공개되자

1. 보도내용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등 학대를 일삼던 부부의 3차 공판이 8일 열렸다. (중략)

검찰이 공개한 첫 번째 영상은 지난 1월16일 오후 4시쯤 촬영된 것으로 C양이 알몸상태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C양의 몸은 어깨와 허벅지 부분이 새파랗게 멍이 든 상태였다.

1월20일 촬영된 영상에서 A씨 부부는 C양에게 파란색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라고 시켰다. 이후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똥을 주며 “[redacted]”라고 먹으라고 소리쳤다. (중략)

C양이 사망하기 전날인 2월7일에 C양이 왼팔을 펴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국민체조 음악을 틀어놓고 이를 강제로 따라하도록 시키는 영상도 공개됐다. C양은 왼쪽팔을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어색한 자세로 체조를 따라했다. (중략)

A씨 부부는 사망 당일 C양이 숨지기 전 자택 화장실에서 C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학대장면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공판기일에 검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함과 잔인함이 느껴지는 가학적인 범죄 수법(학대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해당 내용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학대 정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일반독자에게 이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3. 성관련 보도

사례 18

의결번호	제2021-1044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9월 16일
기사제목	비행기서 음란행위…승객들 눈총에도 멈추지않은 유럽 커플 [영상]

1. 보도내용

「비행기서 음란행위…승객들 눈총에도 멈추지않은 유럽 커플 [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럽의 한 비행기 내부에서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정상적인 보통사람의 성적 수치심과 윤리감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4. 자살 보도

사례 19

의결번호	제2021-295호
매 체 명	포스트쉐어(postshare)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2월 9일 뉴스&이슈면
기사제목	자.살한 '유 퀴즈' ○급 공무원 ○○○ 주무관 현재 인스타 상황..

1. 보도내용

「자.살한 '유 퀴즈' ○급 공무원 ○○○ 주무관 현재 인스타 상황..」의 제목

「자.살한 '유 퀴즈' ○급 공무원 ○○○ 주무관 현재 인스타 상황..」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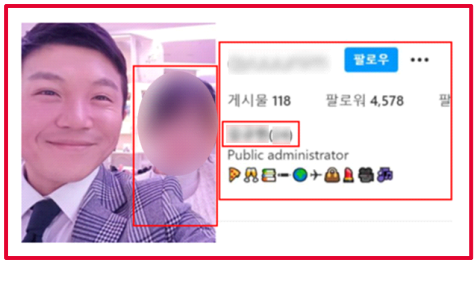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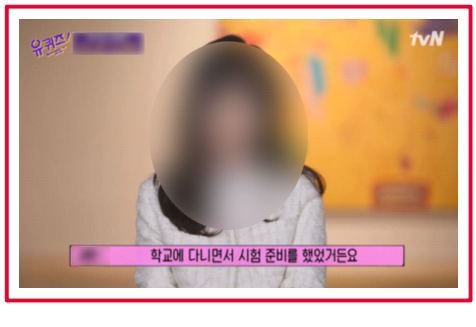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했던 ○○○미술관 ○급 공무원 ○○○ 씨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 씨는 사망 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술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1년 간 미술관에서 ○○○부서 일을 했다.···”고 말했다. (중략)

○○○ 씨 사망 소식에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많은 팬들이 찾아오고 있다. (중략)

○○○ 씨는 최연소 ○급 공무원 합격자로 화제를 모은 인물로,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원래는 아나운서가 꿈이었다. 연극영화과를 다니다가 공무원을 준비했다. 잠을 잘 못자고 공부를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초상, 성명, 나이, 직장, 직위, 직급, 부서, 공무원 시험 최연소 합격 이력 등을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0

의결번호	제2021-462호
매 체 명	인터넷 중부매일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3월 3일 사회면
기사제목	'성 전환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1. 보도내용

「'성 전환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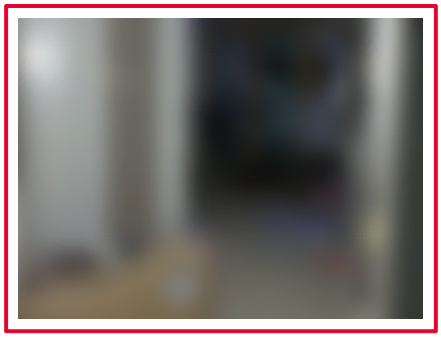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자의 사생활 침해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전환수술 후 강제 전역조치된 모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하면서 자살자의 자택 내부모습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자살 장소를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것으로 자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1

의결번호	제2021-582호
매 체 명	연합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4월 28일 최신기사면
기사제목	“코인 투자 실패” 지난 주말 강원에서 20대 극단적 선택

1. 보도내용

「“코인 투자 실패” 지난 주말 강원에서 20대 극단적 선택」의 제목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지난 주말 강원도 내에서 코인 투자 실패를 비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강원에서 20대 남성이 자살한 사건을 전하면서 자살 동기를 기사 제목에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에 대해 보도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동기만을 그 원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5. 마약·약물 보도

사례 22

의결번호	제2021-19호
매 체 명	인터넷 중앙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2월 30일 사회면
기사제목	'말 처럼 힘이 솟는 약?'…합성마약(○○) 밀수 판매 조직 적발

1. 보도내용

「'말 처럼 힘이 솟는 약?'…합성마약(○○) 밀수 판매 조직 적발」의 제목

「'말 처럼 힘이 솟는 약?'…합성마약(○○) 밀수 판매 조직 적발」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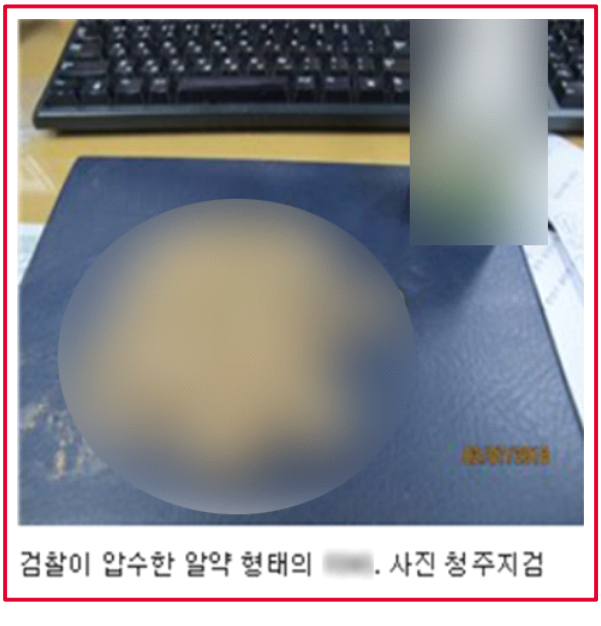

검찰이 압수한 알약 형태의 [redacted]. 사진 청주지검

「합성 마약의 일종인 '○○'를 밀수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다. (중략)

검찰에 적발된 외국인은 ○○○ 성분(○○○)과 카페인 성분 등이 혼합된 합성 마약 ○○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외국인 근로자 등에 판 혐의다. ○○는 태국에서 '말처럼 힘이 솟는 약'으로 불리며 ○○○보다 싼 가격으로 태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밀거래와 투약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중략)

마약판매조직은 ○○ 1정당 ○원에 밀수해, 중간판매상에게 ○원에 공급했다. 중간판매상은 이를 국내 투약자에게 ○원 선에 재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제처럼 알약 형태로 밀수입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충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진천·음성 산업단지 주변 외국인 클럽에서 판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환각적 효능, 마약의 형태(사용방법) 및 사진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환각적 효능, 마약의 형태(사용방법) 및 사진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3

의결번호	제2021-463호
매 체 명	인터넷 한국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2월 25일 사회면
기사제목	10대로 번진 '마약 메뉴판'... ○○○ 접속 5분만에 떴다

1. 보도내용

「10대로 번진 '마약 메뉴판'... ○○○ 접속 5분만에 떴다」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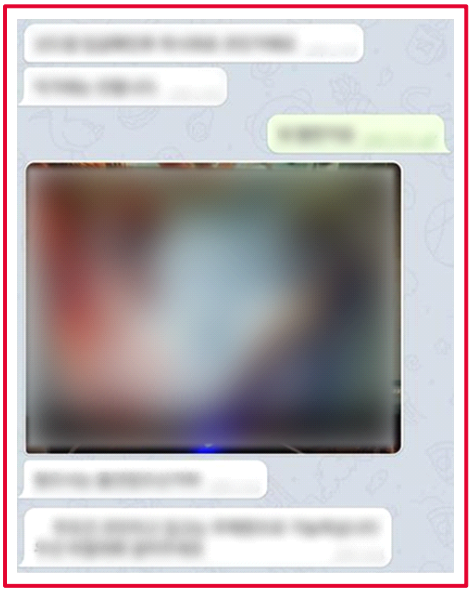

「"○○○ 입금 확인 후 ○○○ 코인 거래요."

○○○에서 만난 마약 판매업자 A씨는 구매가 처음이라고 말한 본보 기자에게 간단한 거래 절차를 알려줬다. 물건을 미리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놓고('○○○'), 가상화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입금 확인 후') 해당 장소의 지도상 좌표를 즉시 알려주겠다는('○○○') 뜻이었다.

각종 마약 은어와 비트코인 가격이 적힌 메뉴판도 전달됐다. “직거래는 하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무조건 코인(가상화폐)”이라고 답했다. 서로 얼굴도 나이도 모른 채 10분 동안 이뤄진 대화였다. (중략)

문제는 구매가 너무 쉽다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물건 인증’ 사진과 함께 다수의 ○○○가 뜬다. 해당 ○○○로 메시지를 보내면 판매책과 연결되는 구조다. ○○○에서 만난 판매업자 B씨는 “어차피 모든 대화가 익명 기반이고 물건도 장소에 던지면 그만”이라며,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대화하는 동안에도 B씨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한 고객들 인증 사진이 단체방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 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6. 폭력 묘사

사례 24

의결번호	제2021-696호
매 체 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5월 4일 국제일반면
기사제목	[영상] 또 '증오 범죄'…美 한인 운영 주류매장서 '벽돌' 폭행

1. 보도내용

「[영상] 또 '증오 범죄'…美 한인 운영 주류매장서 '벽돌' 폭행」 제하의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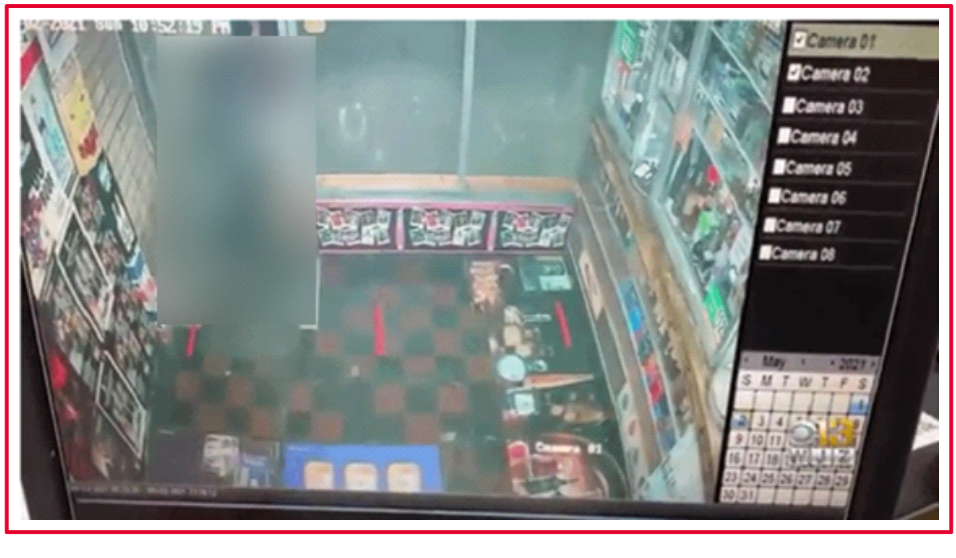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폭력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 영상 게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주류매장에 한 남성이 들어와 가게 주인인 한인 자매를 벽돌로 폭행하는 장면의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비록 해당 영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층 심화된 아시아계 증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 하더라도, 영상 속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5

의결번호	제2021-862호
매 체 명	살구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7월 1일 오늘의 핫이슈면
기사제목	skt 텔레마케터 욕설 충격적인 통화내용 전문(+막말 녹취록 원본 신상 누리꾼 반응 후기)

1. 보도내용

「skt 텔레마케터 욕설 충격적인 통화내용 전문(+막말 녹취록 원본 신상 누리꾼 반응 후기)」 제하의 링크 내 음성파일

「SK텔레콤의 텔레마케터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고객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녹음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략)

아래는 충격적인 통화 내용 원본주소입니다.

https://[redacted]

(후략)」

※ 기사 내 링크 클릭 시 나타나는 음성파일

※ 원 보도 및 링크에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텔레마케터가 고객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통화내용 전문과 녹음파일이 담긴 모 인터넷 게시판 링크를 게시하여 음성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욕설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데 필요했다 하더라도, 가학적인 언어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7. 충격·혐오감

사례 26

의결번호	제2021-207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2월 30일 사회면
기사제목	“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처럼 빙빙”…학대 영상에 누리꾼 ‘분노’

1. 보도내용

「“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처럼 빙빙”…학대 영상에 누리꾼 ‘분노’」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영상이 게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강아지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7

의결번호	제2021-28호
매 체 명	sportschosun.com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2월 17일 연예면
기사제목	[SC이슈] '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마약→자해논란…피투성이 손목 사진 게재

1. 보도내용

「[SC이슈] '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마약→자해논란…피투성이 손목 사진 게재」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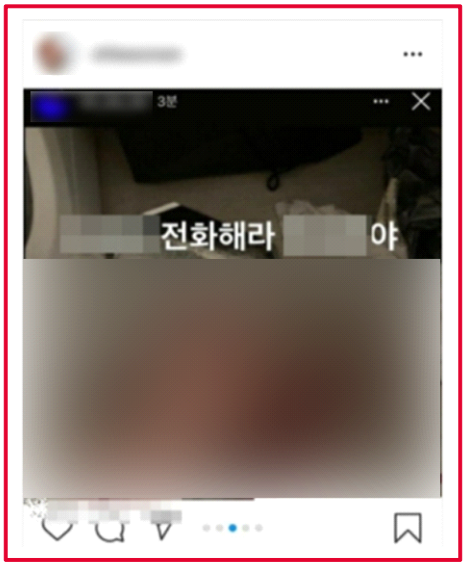

※ 원 보도에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사진이 게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기업 창업주의 손녀가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투성이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8. 여론조사 보도

사례 28

의결번호	제2021-225호
매 체 명	인터넷 이데일리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월 10일 정책면
기사제목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선별지급이 바람직”(상보)

1. 보도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략)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8%가 보편 지급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방식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9. 기사형 광고

사례 29

의결번호	제2021-519호
매 체 명	인터넷 의학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3월 24일 의원·병원면
기사제목	'○○○병원' 첨단시설 갖춘 새 건물로 확장이전

1. 보도내용

「'○○○병원' 첨단시설 갖춘 새 건물로 확장이전」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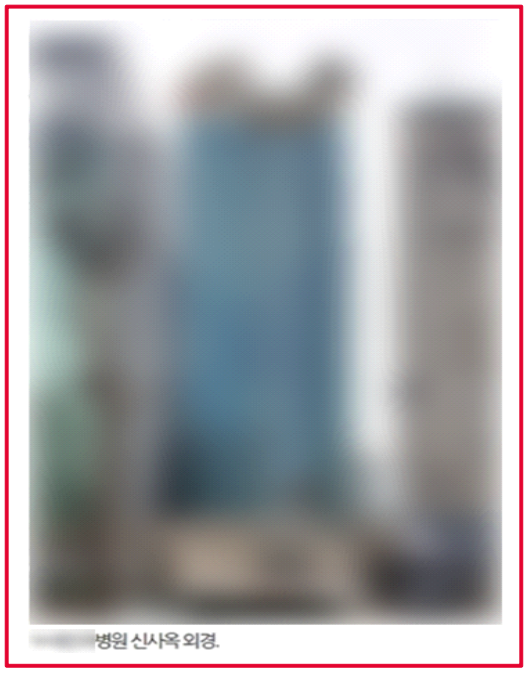
병원 신사옥 외경.

「○○○병원(병원장 ○○○)은 개원 15주년을 맞이한 올해 3월 22일 강남 ○○○로에 첨단시설을 갖춘 새 사옥으로 확장 이전했다.

○○○병원 신사옥은 강남 ○○역 인근 ○○빌딩으로, 지하 1층, 지상 9개층(면적 2,164평)을 전체 리모델링하여 보다 넓고 쾌적한 진료공간으로 변모했다. (중략)

○○○병원은 시력교정 수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타 병원과 달리 망막, 백내장, 녹내장, 각막, 소아&사시, 시력교정, 성형안과, 드림렌즈 등 눈에 대한 모든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후략)」

「○○○ 기자」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10. 기사 제목

사례 30

의결번호	제2021-877호
매 체 명	인터넷 세계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7월 26일 사회면
기사제목	“다리 벌려봐” “너무 예뻐서 그래” 지하철 1호선서 흉기 들이댄 50대 男

1. 보도내용

「“다리 벌려봐” “너무 예뻐서 그래” 지하철 1호선서 흉기 들이댄 50대 男」의 제목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노량진으로 오는 급행열차 안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26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는 전날 오후 6시31분쯤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